

JATE (일본)

1. 개요

<p>■ 정의</p>	<p>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인정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기관 - 단말기기 기술기준 지정 인증기관 - 기술기준 적합인증 업무 수행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TE (재단법인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www.jate.or.jp)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등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p>■ 적용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 전파법 (Radio Law) - 단말기기등의 기술적조건에 관한 법령
<p>■ 인증마크</p>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준 적합 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 :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 단말기기 측정업무 : 인증 기기, 인정정보 등의 공개

2. 주요 사업 내용

가. 기술기준 적합 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

(Technical Conditions Compliance and Design Compliance Certification)

기술기준 적합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은 전화 Network용 설비, 무선호출용 설비, 종합ISDN 설비 혹은 전용 통신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에 대해 총무대신이 정한 기술기준(단말설비규칙)에 적합여부를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 인증 결과 내용은 정부의 관보와 JATE의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나.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Technical Requirements Compliance Certification)

기술적 조건 적합인증 사업은 이동통신 단말, 전용통신 회선설비 단말 등에 대하여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성에서 인가된 기술적 요구조건에 적합 여부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인증결과는 전향과 같이 JATE의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다. 단말기기 측정업무 (Terminal Equipment Testing Service)

기술기준 적합인증 신청에 필요한 일반 전기적 특성의 측정 및 통화 품질측정을 희망자의 의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라. 인증기기, 인정정보 등의 공개

- 인정기기 일람의 공개
- 인정제도, 신청서 작성예 등 업무에 관한 자료의 공개

3. 인정 번호

인정 번호의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예) ACD 01 - 0100 JP
 단말기기종류 년도 통지번호 지정인정기관약호

4. JATE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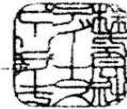
FG-1000S(1port Residential Gateway)	VDSL Modem Switch
IP-Phone	VOICE DIALER
OPTIC MODEM	VoIP Gateway
SAVERCALL-2000	eDSL400
Splitter	단독형보안기기
VDSL MODEM	주방용 AV System

5. JATE 인증서

受付確認通知書

〒564-0063

大阪府吹田市江坂町1-12-4
第2江坂ソリトンビル4F
株式会社ディーエスピーリサーチ



下記の納入機器について、受け付けましたことを通知します。

申込者			
機器名	Hinme Watcher FP204		
系列機器名			
機器の種類	電話用設備に接続される端末機器（その他の端末機器）		
受付番号	A04-0020003	通知年月日	平成16年6月16日
備考	受付番号：04-0369 本通知書は、申込書の受理を申込者に通知するものです。下記の場合、本通知書に関わらず、認定を行うことができません。 ① 受付番号は審査の過程において変更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② 申込書に不備があり、申込書に対して承認を拒否する場合 ③ 申込書を受け受理した日から起算して30日を経過し、かつ、以下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であって、申込者に対し申込の取下げを求める場合 ④ 申込書の受理をおこなった日から30日以内に手数料の納付がなかったとき。 ⑤ 申込書の提出が第8条及び第19条の規定に基づく追加の書類又は設備の提出を求めた日から20日以内に提出がなかったとき。 ⑥ 申込書の提出が第8条及び第19条の規定による書類に不備があり、その修正を求めた日から20日以内に修正の措置をとらなかったとき。 ⑦ ①～⑥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⑧ ①～⑥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⑨ ①～⑥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